



M/S사, NET의 기능에 관련되는 광범위한 특허 신청

[자료원: zdnet 2003. 2. 12]

Microsoft사가 NET의 각종 기능에 관련되는 광범위한 특허를 신청하고 있다.

이 특허신청이 그대로 인정되면 네트워크의 접근, XML의 처리, 복수 소스의 데이터 관리에 관련한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API)가 대상이 된다. API는 어플리케이션과 다른 시스템의 제휴를 실현하는 이음쇠와 같은 것이다.

Microsoft의 NET 관련 특허가 표준 개발 프로세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는 미지수이다. 동사는 이미 NET의 많은 기초 기술을 표준화 단체 ECMA(구European Computer Manufacturers Association)에 제출하고 있다.

Microsoft는 이 특허 신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삼가고 있지만,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는 만약 이 특허가 인정되면 동사는 소프트/디바이스 개발자가 NET와 연계를 취하는 방법 혹은 연계를 취할지 여부를 지시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고 있다. “대단히 광범위한 특허이다. 극히 중요한 의미를 갖을 가능성성이 있다”고 Mckenna Long & Aldridge의 파트너 변호사인 Schwartz씨는 말한다.

다른 주요 표준화 단체 World Wide Web Consortium(W3C)에 참가하고 있는 인물은 Microsoft의 구체적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NET 관련 특허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고 있다. W3C는 「개발한 원래의 기업이 그 기술을 로열티없이 제공하기로 동의할 경우는 특허 첨부의 기술을 표준에 포함한다」라는 방침을 책정하고 있다. 익명의 인물에 의하면 Microsoft는 과거에 이러한 조건에 동의하고 있다고 한다.

open source/무료소프트 운동 지지자 사이에서는 IBM이나 Microsoft 등 특허를 이용해 고액의 제품 개발비를 회수하려고 하는 기업에 대한 특허 논쟁이 점차 격렬해지고 있다. 이러한 운동가들은 특허 프로세스는 Web의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컨설턴트로 open source 운동의 리더이기도 한 Bruce Perens는 Microsoft의 NET 관련 특허에 의해 대체 소프트의 개발이 방해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open source 개발자는 이미 open source판 NET의 개발에 임하고 있다. 그러한 프로젝트의 하나인 「Mono Project」는 NET와 같은 API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내년 동프로젝트가 완료할 즈음에는 개발자는 Linux/UNIX상에서 동작한다. NET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Free Software Foundation(FSF)의 주도자 Richard Stallman과 같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특허를 확보하려고 하는 기업에의 불매 운동을 호소하고 있다.

일본특허청, 엄격한 단백질 특허심사

[자료원: 니케이신문 2003. 2. 17]

특허청은 의약품 개발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에 대해서 입체 구조가 판명된 것만으로는 특허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을 결정했다. 단백질을 순수한 결정으로서 꺼내는 것을 특허 성립의 조건으로 하는데 구미의 특허 당국도 같은 심사 기준을 채용할 전망이다. 미 바이오 기업 등에 입체 구조 데이터로 단백질 특허를 얻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성립 조건이 엄격해지게 되어 일본 기업

에 반격의 기회가 증가할 것 같다.

단백질은 인간의 신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로서 끈을 작게 접은 것 같은 복잡한 입체 구조를 하고 있다.

특허청은 단백질의 입체 구조의 해명은 자연의 관찰로 얻은 정보를 나타내는 것에 지나지 않고, 발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입체 구조를 나타낸 문서나, 플로피 디스크 등의 매체에 기록한 데이터의 출원이 있어도 특허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생물로부터 단백질을 꺼내 정제해 결정으로 할 경우에 한해 물질 특허로 인정할 방침이다.

USPTO의 새로운 수수료 개정안에 대한 평가

[자료원: New York Law Journal 2003. 2. 18]

USPTO의 2002년 6월의 최초 개정안은 미국 의회뿐만 아니라 특히 업계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¹⁾ 특히 수수료 수입 초과분에 대한 전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다.²⁾ 특히 업계와 의회로부터의 반대로 인하여 미국 특허상표청은 특허 출원과정에 대한 총점검을 하려던 야심찬 계획을 축소하게 되었다. USPTO는 2003년 2월 4일에 “21세기 전략계획”의 최종 수정안을 발표하였고, 동시에 21세기 전략계획 중에서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수수료 체계에 대한 새로운 수정안을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제출하였다.

새로운 계획에 의하면, 기본적 출원료는 1,000 달러(중소기업 및 개인은 750달러)로 현재의 각각의 750달러(375달러)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증

가한 것이다. 이러한 수수료는 비록 높은 인상이기는 하지만, 최초의 제안보다는 낮은 것이다. 하지만, 개인 및 중소기업에게 있어서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갈 것이다.

또한 USPTO는 출원서의 분량에 따라서 할증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100면이 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50면당 250달러를 부과할 것이다. USPTO는 전체적으로 15-20% 증가된 수수료 수입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정된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수긍을 하는 편이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는 수수료 전용 문제이다. 비록 부시 행정부가 2003년 2월 3일에 작년에 비해 감소된 전용 예산을 발표하긴 하였지만, 이러한 전용액이 어떠한 수준에서 감소될 것인지 혹은 중단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히 업계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수수료전용이란 수수료수입을 정부 타부처의 목적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수정안에 의하면 선행기술조사업무는 내부의 심사관이 하지 않고 외부기업에 outsourcing 될 것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현재 PTO는 outsourcing을 출원인에 일임하지 않고 PTO가 Handling 할 계획으로 있다. 특히 변호사들은 아웃소싱의 장단점을 실행에 들어가서야 표면으로 나올 것이며, 결국은 어떻게 실행할것인가의 문제라고 평가하고 있다.

수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심사처리가 완결되기 전에 출원을 취하할 경우에 부분적인 수수료 환불을 해 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특히 변호사들은 이러한 환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지고 있다. 출원인들은

1) 2002년 6월에 발표되었던 USPTO의 “21세기 전략계획”的 내용과 “수수료 개정안에 대한 논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연구보고서 (2002-1) 「주요국의 수수료 체계 및 현황 분석」 57-71면 참조

2) 미국 수수료 초과분에 대한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앞의 보고서(주요국의 수수료 체계 및 현황 분석)의 51-56면 참조



특히 선행기술 조사 이전에 자신의 출원을 취소 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USPTO는 최대 1년반 동안 출원에 대한 심사연기를 허용하려던 최초의 안을 포기하였다. 심사청구의 연기는 지재권 업계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했다. 사람들이 넓은 청구범위를 출원해 놓고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서 잠정적인 경쟁자들이 정확한 권리범위를 알지 못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IP 업계에는 이번 USPTO의 최종 개정안에 대해서 그런 대로 견딜만하다는 평가를 내렸고, 전반적으로 합격점을 받은 것 같다.

WTO 의약품 협상안을 거부한 미국에 대한 비난

[자료원 : The Guardian 2003. 2. 19, AP 2003. 2. 18]

조오지 부시 대통령은 제약산업과의 가까운 유대로 인해서 개발도상국에 값싼 약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 WTO 제네바 협상을 망쳤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WTO의 협상대표들은 지난한 국가들이 필수적인 의약품에 대한 값싼 약품의 수입을 허용하도록 특허법을 느슨하게 할 수 있는 협상안을 미국이 2월 18일 회의에서 다시 한번 거절한데 대해서 분개하고 있다. 한 유럽의 무역관리는 미국정부가 압력집단과 거리를 두고 그들의 지시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협상자들도 협상 타결의 걸림돌이 미국이라고 주장한다.

WTO의 144개국 회원들은 1년 넘는 기간 전에 회원국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특허법상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며, 필수 의약품에 대한 모방약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지역의 제약업자들에게

라이센싱을 줄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국가의 경우 어떻게 이러한 시약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수입”에 대한 협정초안이 2002년 12월에 제약회사의 로비를 받은 미국에 의해 거부되었다. 제약회사들은 모방약품에 대한 수입을 허용할 경우, 브라질이나 인도의 모방약품 제조회사들이 미국의 오리지널 약품제조회사들의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수입이 허용되는 시약을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을 포함한 몇 가지 질병에 한정하자는 역(逆)제안을 했으나, 개발도상국들은 너무 한정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어떤 나라가 특허권이 만료되지 않은 모방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가를 결정하자는 브라질의 제안은 18일 토론되지 않았다. 또한 수입을 원하는 국가의 경우 “국가재난”을 선포하도록 요구한다는 한 남아프리카의 지난주 주장도 미국의 제약업계를 설득하지 못했다. 한편 같은 날 그 동안 WTO에서의 후진국에 대한 에이즈 치료 제 등 의약품 공급과 관련된 그간의 협상을 주도하던 Mr. Eduardo Perez Motta 멕시코 WTO대사가 협상의 타결을 이루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쳤다.

PCT 통계 자료

[WIPO 홈페이지, 2003. 2. 18]

WIPO는 2월 18일 특허협력조약(PCT)에 근거한 국제특허출원건수가 약 115,000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가별로는 네덜란드 26.1%,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각각 22.8%, 일본 14.2%, 독일 12.1% 미국 11.5% 증

가하였다. 개발도상국이 국제출원한 건수는 1997년 680건에서 2002년 5,359건으로 700% 증가되었다. 2002년에 높은 증가율을 보인 개발도상국으로는 인도 51.9%, 멕시코 19.6%, 싱가포르 18.8%, 한국 10.1%이다. 현재 PCT 체약국은 118개 국가로 이중 개발도상국은 64개국이다.

12년 연속해서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의 산업과 발명가들이 가장 많이 PCT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명 | PCT출원수 | 점유율 |
|------|--------|-------|
| 미국 | 44,609 | 39.1% |
| 독일 | 15,269 | 13.4% |
| 일본 | 13,531 | 11.9% |
| 영국 | 6,274 | 5.5% |
| 프랑스 | 4,877 | 4.3% |
| 네덜란드 | 4,019 | 3.5% |
| 스웨덴 | 2,988 | 2.6% |
| 한국 | 2,552 | 2.2% |
| 스위스 | 2,469 | 2.2% |
| 캐나다 | 2,210 | 1.9% |

2002년에 국제출원을 많이 한 기업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① Philips Electronics ② Siemens ③ Bosch ④ Ericsson ⑤ Matsushita Electric ⑥ Sony ⑦ Nokia ⑧ 3M ⑨ Bayer Procter & Gamble 이다.

출원이 많이된 기술분야는 물리학, 화학, 야금과 전기이다.

| IPC 분류 | 점유율 |
|---------------------------|-------|
| G 섹션 물리학 | 21.7% |
| C 섹션 화학, 야금 | 19.6% |
| H 섹션 전기 | 18.8% |
| A 섹션 생활필수품 | 17.0% |
| B 섹션 처리조작 | 13.3% |
| F 섹션 기계공학, 조명, 가열, 무기, 폭파 | 5.9% |
| E 섹션 고정구조물 | 2.4% |
| D 섹션 섬유, 지류 | 1.3% |

영국 특허청, 특허출원에 있어서 Red-tape 제거 모색

[자료원: 영국 특허청 Press Release 2003. 2. 25]

영국 특허청은 2003. 2. 25 특허출원의 형식과 내용을 규정하는 법률을 간소화하기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특허출원인들이 현재 당면한 행정적 애로사항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특허 변리업계, 영국 산업계, 그리고 일반 대중으로부터 의견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협의체에 의한 의견수렴기간은 2003. 5. 30까지이다.

Ron Marchant 특허국장은 “특허출원관련 서류들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어려운 형식들이 없어도 특허법은 충분히 복잡하다. 우리는 고객들을 위하여 특허제도를 간소화하고 특허제도에 대한 고객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특히 보호 범위에 대한 손상 없이 개선은 이루어질 것이다. 고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행을 통일화하고자 하는 많은 다른 국가들이 그려했듯이, 이러한 변화는 WIPO 특허법조약에 서명할 때 우리가 동의한 조치를 실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앞으로의 협의체에 의한 개혁안은 특허출원을 대행하는 변리업계 뿐만 아니라 특허출원인과 특허권자에게 혜택을 부여할 것이다. 변리업계는 인하된 비용, 더 강화된 법률적 명확성, 거래의 용이성 등의 형태로 출원인들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개혁안의 일부는 제3자가 누리는 보호를 확대할 것이며, 이는 결국은 일반 대중 대부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개혁안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포함한다.

- 작성된 서류 형태(예를 들면, 비 영어로 된 서류) 중 어떠한 것이 매우 중요한 특허출원



- 일자를 확보하는데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의 완화
- 2. 출원일에 과실로 누락된 명세서 또는 도면 일부의 나중제출을 더욱 허용하는 조치 (일정한 경우에는 원 출원일자를 유지)
- 3. 형식적인 면이나 혹은 실질적인 심사 보고서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기한의 연장을 적어도 한번은 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현행은 그러한 연장은 임의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적절한 이유를 첨부해야만 가능하다)
- 4. 출원인이 기한을 지나쳤기 때문에 종결된 출원에 대한 부활을 위한 새로운 조항
- 5. (파리협약에서처럼) 12개월의 기한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소정의 새로운 기회 부여
- 6. (예를 들면, 특허가 양도되었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아닌 매도인 단독으로 서명했을 때에도 거래 서류가 유효하도록 하는 조치
- 7. 연간 30,000건이 넘는 특허출원을 국가 안보의 이유로 모두 점검하는 것을 중단. 안보에 민감한 기술출원은 매년 소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보완책으로서 출원인이 안보절차를 거쳐 출원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도록 제안된다.

HP, 지재권관리부서 통합을 통한 특허권 행사로 수익 대폭 확대 추진

[자료원: CNET news.com 2003. 2. 25]

휴렛팩커드사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자산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이윤을 얻어낼지는 기꺼

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로부터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HP와 친밀한 소식통에 따르면 “HP는 가지고 있는 지재권으로부터 수억 달러의 이윤을 창출하기를 희망하며, HP는 License계약을 하기 위한 독립적인부서 혹은 Business Unit 을 일년 이내에 만들 계획이다”라고 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IBM사가 HP보다 보다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쟁사인 IBM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통하여 대충 10억 달러의 이익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HP사는 USPTO로부터 특허를 받은 회사들 사이에서 9위에 올랐는데, 이는 처음으로 Top 10에 기록된 것이었다. HP사는 지난해 2001년 보다 40% 증가한 1,385건의 U.S. 특허를 받았다. HP가 지난해 인수한 Compaq Computer가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특허의 대략 25%를 가지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특허소송에서 왜 영미법원보다 독일 법원을 선호하는가?

[자료원: Mondaq 2003. 2. 20]

독일 Bardehle Pagenberg Dost Altenburg Geissler 법률회사의 Reinhart Schuster 변호사는 다국적 기업이 특허권자로서 독일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영미법원과 비교하여 유리한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독일법원의 신뢰성

많은 국제적인 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독일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시간과 비용의 경제성 뿐 아니라 독일법원과 그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에

기인한다. 유럽공동체의 특허법 통일화가 진행될 수록 특허침해소송에서 독일법원은 중추적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독일에서는 첫 소송(제1심)에 있어서 11개의 선별되어진 지방법원(Landgerichte)의 특별위원회(specialized chambers)에서 청문되어진다.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는 지방법원은 뒤셀도르프, 뮌헨, 만하임 등이고 특별히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전체 유럽 특허사건의 약 30%와 전체 독일 특허사건의 약 50%를 처리한다.

미국의 경우 항소심에 와서야 비로소 특허법에 전문성을 가진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나 독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1심을 특허와 관련된 계속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가진 판사들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독일법원에 경우 판사는 필요할 경우 직권이나 요청에 따라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으나 소송당사자가 제출한 전문가의 의견은 증거로서의 직접적인 효력(direct value of evidence)이 없다. 따라서 판사들마다의 이러한 전문가 위촉의 경향은 특허변호사의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진다. 독일법원에서의 비교적 관대한(liberal) 균등론에 대한 해석은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요건이 될 수 있다. 침해사건에 있어서는 변리사(patent attorney)가 아닌 변호사(attorney at law)가 담당하여야 하는 독일법상 독일 법원에서의 일반적인 침해소송의 경우에는 지재권전문법률회사에서의 변리사 변호사의 결합된 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시간적 요소

독일법원에서의 제1심의 경우 대부분 1년내에 결정이 되며, 제2심(appeal instance: oberlandesgericht)의 경우 1년에서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빠른 소송의

진행을 나타내며 2002년 1월부터 개정된 독일 민사소송법(ZPO)의 영향으로 더욱 빠른 특허침해소송의 진행을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영미법원에서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원의 증거제출명령과 제출된 증거에 대한 상호질의의 과정이 없이 재판에서 두어시간의 청문과 본재판 전에 제출되는 서면답변으로 증거에 대한 논쟁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비용

폐소한 당사자는 소송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제1심의 경우 보통의 경우 소가는 약 50만 마르크에서 500만 마르크가 되고 이 경우 폐소시 부담할 소송비용의 위험부담은 보통 5만 마르크에서 25만 마르크 정도가 된다. 제2심의 경우는 약 30%정도 증가하고 제3심의 경우에는 제1심의 두배정도가 된다.

EU, 공동체 특허(community patent) 에 대한 협정체결

[자료원: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3. 3. 4, 니케이신문 2002. 3. 4]

EU 경쟁력 이사회(Competitiveness Council)은 3월 3일에 공동체 특허(community patent)의 창설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공동체 특허에 대한 논의는 EC 회원국들이 공동체 특허에 관한 “룩셈부르트 협약”에 서명한 1975년부터 진행되어 왔다. 즉 특허절차의 일원화는 EU에서 30년이 넘는 현안이었다.

유럽위원회, 이사회 및 연구계에서는 회원국들 간의 상이한 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쟁의 왜곡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허로 보호되는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동체



특허가 필요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협정은 공동체 특허의 관할 제도, 사용 언어, 국내 특허청의 역할 그리고 수수료 배포에 대한 주요 특징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였다. 협정에 따르면, 특허 출원인은 유럽 특허청(EPO)의 3가지 공식 언어(영어, 불어, 독어) 중 하나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EPO 공식 언어가 아니더라도 번역서를 첨부한 것이라면 출원을 할 수 있다. 일단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권자는 모든 공동체 공식 언어로 번역한 서류를 제출할 책임이 있게 된다.

EPO는 특허출원서의 심사 및 공동체 특허의 부여에 있어서 유일한 책임을 맡으면서 공동체 특허의 행정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국내 특허청의 역할은 잠재적인 출원인에 대한 조언 제공, EPO에 출원서 제출, 특허 정보의 유포, 중소기업에 대한 조언 제공을 하게 될 것이다.

EPO의 3가지 중 하나의 공식언어로 운영하고 있고 EPO와 긴밀한 업무 공조의 경험이 있는 국내 특허청은, 만약 원한다면, EPO를 대신해서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사회와 각료들은 단일의 법원 설립에 동의하였고, 단일 법원은 재판관할권의 통일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이미 존재하는 유럽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조치 및 무효 주장 혹은 침해 절차뿐만 아니라 특허 사용에 관한 절차와 무효에 대한 반소(counterclaim)에 대한 독점적인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공동체 특허에 대한 소송은 늦어도 2010년에는 설립될 공동체 특허 법원(CPC : Community Patent Court)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CPC는 유럽 공동체의 제1심법원(Court of the First Instance)이 될 것이다. CPC가 요구하여 동의한 다른 언어로 사용되지 않는 한 피고인의 근거지

인 회원국의 언어로 재판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다. CPC가 설립될 때까지 각 회원국은 재판 관할권이 있는 여러 개의 국내 법원을 지정하게 된다.

기업이나 발명가가 EU 창구에 특허를 신청하면 전가맹국에서 효력을 가지게 되며, 개별 절차에 비해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유럽 위원회에 의하면 EU에서의 특허 절차는 지금까지 8개 국에의 신청으로 약 5만 유로(약 640만엔)와 일·미의 5배 정도 걸리고 있었다. 번역 비용이 원인. 신제도에서는 EU의 全公用語(현재는 11)로 번역하는 것은 서류의 일부에 그치고 나머지는 영어 등의 주요 언어로 번역하게 되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인도, 건전한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특허권 강화 움직임

[자료원: Business Week 2003. 2. 12]

덴마크의 제약회사인 H. Lundbeck은 인도의 제약업체인 Matrix Laboratories가 개발한 제조 공정기술에 대한 권리에 대한 대가로 4천만달러 이상의 금액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동기 술은 H. Lundbeck사의 항우울제인 Cipramil의 핵심 성분의 제조기술이다. 동 금액은 Matrix Laboratories사가 2002년 판매한 총액수 보다 많은 금액이다. 동 제안에 대해서 Matrix사의 경영진은 Cipramil을 생산하는 모방제조업자로서의 소비자에 대한 의무와 전세계적으로 동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게 원료를 판매하는 시장을 염두에 두고 동 제안을 거절하였다.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도 제약업체들은 Matrix사와 같은 작은 규모의 회사나 Ranbaxy와 같은 큰 규모의 회사에 이르기까지 소프트산업에서와 같이 찬임금과 잘 숙련된 기술

자를 활용하여 세계의 다국적 제약회사를 위협하고 있다.

인도 제약회사의 외국수출은 작년에 14% 증가하여 21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 총수출액의 4%에 달하고 있다. 인도제약협회(OPPI)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2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매년 800억 달러에 달하는 특허권이 있는 약품들이 2007년에 특허권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모방약품에 대한 세계시장은 급속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는 세계적으로 특허보호가 가장 약한 나라이며, 인도의 제약산업은 주로 특허를 가진 의약품을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모방약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다는 이미지를 개선하지 않으면 진정한 제약산업 강국으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인도정부는 2005년까지 특허법을 강화시켜, WTO 회원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약품의 리버스-엔지니어링을 어렵게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EU,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규의 엄격한 집행을 촉구하는 새로운 훈령(Directive)안을 제출했다.

이번 훈령안은 EU 역외로부터 수입되는 복제제품에 대해 세관의 압수권을 인정한 새로운 규정(Regulation)안을 보완한 것으로서, 일차적인 목적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대한 회원국들의 국내법을 서로 조율하고 담당 부처들 사이의 정보 교환체계를 확립하자는 데 있다. 또 EU 역내에 있는 지식재산권자에게 공평한 활동 공간을 보장해 주고, 침해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

함으로써 무단 복제 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억제하려는 것이다.

볼케슈타인(Frits Bolkestein) 유럽연합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불법 복제와 저작권 침해는 지식 재산 소유권자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보상을 사실상 훔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행위를 뿌리뽑지 않는다면 산업 혁신과 문화적 창의성이 점점 약화되 경쟁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과 역동성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것”라고 밝히고, “그래서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들을 엄격히 다루고 EU 역내에서 그들이 숨을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 의회와 EU 각료 시사회의 공동 결정(co-decision)을 통해 이 훈령이 채택되면 각 회원국은 이에 근거해 자국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 유럽과의 교역과 과학기술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훈령안의 내용과 의미를 3차례에 걸쳐 요약한다.

□ 훈령(안)의 내용

훈령안에는 저작권은 물론 상표와 로고, 디자인과 같은 산업적 자산을 포함한 모든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대규모” 침해 사범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훈령안은 무엇보다 상업적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침해 행위나 지식재산권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침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훈령안은 또 불법 행위자체를 억제하는 동시에 정당한 상거래와 정보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훈령안은 이미 불법 행위 근절에 효율적이라고 증명된 회원국 법령의 ‘우수 사례’를 기반으로 마련되었다. 이에 따르면 모든 회원국들은 가령, 무



단 복제 상품 판매 금지 명령(injunction), 용의자 은행 계좌의 추적이나 사법 당국의 증거 확보 능력 강화와 같은 예방적 대책, 그리고 침해 사법이 소유권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직접 배상도록 하는 제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회원국들은 고의적 또는 상업적 목적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중대한 침해 행위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법 행위의 시도, 참여, 사주 등에 대해서도 징역형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중범죄로 다루어야 한다.

□ WTO의 TRIPs와 EU의 훈령안

이번 훈령안은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TRIPs plus”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접근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가 체결한 TRIPs 협정은 EU 회원국에 적용될 최소 조항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안은 TRIPs 협정 조항 외에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추가되어 있다.

- 진품 확인용 보안 장치 위조에 사용되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는 기계류의 금지
-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무역협회나 관련 단체에게도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사법 당국에 불법 복제품의 원산지, 생산량, 주문량, 배달량, 그리고 가격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 제품의 생산 및 판매망에 관련된 자의 신상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판결 공포
- 침해자 비용으로 시중 불법 제품의 회수

유럽연합이 이렇게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훈령안을 제출한 데는 무엇보다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그 규모 또한 계속 대

형화 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훈령안과 관련해 이러한 피해 양상을 소개하고 있다.

□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의 심각한 악영향

불법 복제와 저작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는 단지 소유권자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EU 집행위원회의 입장이다. 가령 다음과 같은 피해를 예로 들 수 있다.

- 경제 : 투자율 감소 및 중소기업의 도산 등
- 사회 : 실직, 소비자 안전 및 창의력 위협 등
- 정치 : 세수의 감소 등

이러한 불법 복제 및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한 손실이 이미 도처에 나타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집행위원회는 파악하고 있다.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불법 복제와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해 매년 EU 내에서만 1만 7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문제는 몇몇 특정 분야에서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 부문의 경우, 현재 EU 내에서 유통중인 소프트웨어의 37%가 불법 복제된 것이라고 한다. 이는 시가로 환산하면 연간 29억 유로에 해당한다.

또 음반 업계의 매출액은 2001년 동안 EU 전체에서 평균 7.5% 감소했다. 신발과 의류 부문에서도 불법 복제 및 상표 도용 상품의 매출이 전체의 약 22%를 차지했다.

□ 인터넷과 조직적 지식재산권 침해

특히 음악, 영화, 비디오, CD, DVD 같은 문화

산업과 컴퓨터 및 기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불법 복제 및 저작권 침해 양상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불법 복제와 저작권 침해가 날로 조직 범죄나 심지어 테러리스트 활동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것은 높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적발될 위험이 적을 뿐더러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준이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EU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대책

현재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법규에는 중요한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불법 복제 및 저작권 침해 사범은 이러한 차이를 교묘히 이용하여 한 회원국에서 불법 복제 사업을 벌인 후 적발시에는 법적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웃나라로 도피하곤 하였다.

따라서 EU 모든 회원국들이 상호간의 법률적 차이를 없애고 EU 전체의 통일적 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자국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

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이 범죄에 대해 처벌 및 제재를 강화하고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도 공감대를 넓혀 왔다. 결국 이번에 마련된 훈령안은 바로 이러한 사항을 회원국들에 촉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집행위원회는 EU 내에서 불법 복제와 저작권 침해 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 내의 지식재산권 침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돋고 대책 마련을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1998년 10월부터 유럽 역내 시장에서의 불법 복제 행위 근절에 관한 녹서를 발간하고 광범위한 의견 교환과 관련 회의를 조직하였다. 이 녹서 발간을 계기로 집행위원회는 2000년 11월 30일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훈령 공포 등을 포함한 야심찬 계획을 시작하였다.

2000년 5월 이미 유럽 의회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2001년 5월에는 유럽경제사회위원회가 역시 유사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서 집행위원회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 왔다.

출처 Cordis Focus

